

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지침 안내

-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
- 고용조정 제한 기간 : 참여청년 채용일 3개월 전 ~ 정규직으로 채용 된 후 1년의 기간
지원금 신청중 고용조정 이직(구,인위적 감원) 발생시 모든 지원금은 중단
- 대상자 : 도약장려금 참여 청년과 다른 근로자 모두 포함
- 지원금
 - 유형 1 (기존) : (청년 1인당) 월 60만원 × 최대 12개월 = 1년 최대 720만원
 - 유형 2 (신설)
 - 조건 : 기존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
 - 업종 : 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 기업 모두가 대상이 됨
※ 제조업 이외의 빈일자리 업종은 -3쪽- 참조
 - 기업 지원금 : '유형 1'의 지원 내용과 동일
 - 청년 지원금 : 장기근속인센티브로 최대 480만원 지원 (18,24개월 각 240만원)
*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 순서에 따라 지급, 조기마감시 지원금 지급 불가
- 2025년 최저임금 2,096,270원 (주5일, 일 8시간근무 기준)
 - 최저임금 산정범위: 기본급, 직무수당, 직책수당 등
- 청년 채용 ~ 6개월(최소고용유지기간) 6개월내 고용조정 이직(구, 인위적감원) 발생이나 자발적

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하지 않음

-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
 - 참여 기간 동안 유지해야함, 유지 × ▶ (부적격처리됨)
-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형태
 - 파견 근로자(A소속으로 B에서 일하는 사람), 용역, 도급, 위탁 → 가입 제한
-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중복 참여한 자 → 가입 제한
 -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 일체, (특별)고용촉진장려금 등
-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·비속 관계에 있는 자 → 가입 제한
-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→ 가입 제한
 - 부동산 임대업 가능(단, 고용인이 없고, 사무실이 없어야함)
- 정규직 내 수습기간 3개월 이내만 인정함
- 허위로 서류를 작성·제출시 → 가입 제한 및 부정수급
 - 부정청구 결정 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, 필요시 참여제한 및 수사기관 통보
- 참여 기업 및 청년은 운영기관 신청 및 승인시 상황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으로 변경 사유를 공지해야 함

1. 지원대상(기업)

참여자격

■ 유형 1

- ① 피보험자수 5인 이상, 우선지원 대상기업
 -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
- ② 피보험자수 1인이상 5인미만인 기업 가능
 - 지식서비스업, 문화콘텐츠, 신·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,
- ③ 참여기업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, 운영기관의 배정인원 마감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
 - 최초 사업 참여 신청시 승인받은 기준 피보험자수
- ④ 연 매출액 :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× 1,900만원이상
 - 사업개시일 1년 이상 기업 해당
 - 연 매출액 발급(2023년 또는 2024년)

- *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이용 시
로그인 - 민원증명 - 부가가치세,과세표준증명탭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발급
- * 정부 24 (gov.kr) 이용 시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

■ 유형 2 (25년도 신설)

- 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
- ② 빈일자리 업종 :
 - 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
 - 제조업 이외의 빈일자리 업종

연번	빈일자리 업종	소관부처	대상기업
1	보건복지업	복지부	1,778개 대상기업
2	농업	농식품부	35개 대상기업 * 음식점업·제조업 등 포함
3	식품제조업	농식품부	16개 대상기업
4	해운업	해수부	907개 대상기업
5	수산업	해수부	2개 대상기업

※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

제외대상

-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 - 일반유흥(56211), 무도유흥 주점업(56212), 기타주점업(56219),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(91249), 무도장운영법(91291)
- ② 「청소년 보호법」 등 법률에 의거 청소년유해업소,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법
 -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
 - 단, 호텔업(55101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 가능
- ③ 국가 및 공공기관 등
 -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, 지방의회, 교육행정기관 등
- ④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아닌 경우
 -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(74100)
 - 기업에서 파견·용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
- ⑤ 임금체불기업
- ⑥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
- ⑦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내 있는 사업주
- ⑧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
- ⑨ 지원대상자가 동일사업주에 재 입사하는 경우(1년이상은 가능)
- ⑩ 지원대상자가 관련사업주에 재 입사하는 경우(1년이상은 가능)
 - 이직 전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
 -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
 -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 -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
- ⑪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
2. 지원대상(청년)

<p>참여자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●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취업 중인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-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프리랜서)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 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# 부동산 임대업 가능(단, 임대사무실 없고, 근로자 고용 안 한 경우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#e67e22; font-weight: bold;">* 참여요건(참여요건 10개중 1개가능 = 참여가능) * 다른 자격요건 확인필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- 자영업자 및 특고·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취업상태임 단, 1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(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)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-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대(원격대학)·야간대학·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자는 대학에 재적 중으로 간주해서 요건2 적용 불가 - 고등학교 졸업예정(기업-현장선도기업, 수업일수 2/3 출석한 자) 가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(고용보험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26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취업희망풀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금 검토시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제외됨 -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시 중복은 불가 ④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등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
--------------------	--

	<p>⑧ 북한이탈청년(확인서 - 민원24 발급가능)</p> <p>⑨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-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 발급)-청년발급</p> <p>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-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은 제외 - 3개월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(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) -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대(원격대학)·야간대학·대학원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중인자(졸업예정자 포함)는 요건10 적용불가</p>
<p>제외대상</p>	<p>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(계약직 등)</p> <p>② 고용보험(4대보험포함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</p> <p>③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</p> <p>④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</p> <p>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-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 이민자(F-6) 가능</p> <p>⑥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- (특별)고용촉진장려금등 - 연구비지원 : 청년 인건비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청년 인건비 명시 없이 총 연구비만 받아서 인건비 지급인 경우 전액을 지급</p> <p>⑦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</p> <p>⑧ 지원제외(소비행락업등)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</p> <p>⑨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이 파견·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</p>

3. 채용 요건

입사일	2025. 1. 1. ~ 2025. 12. 31
근무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-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수습(시용) 기간 정한 경우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지원대상 인정(단, 3개월 이내만 인정) -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 인정
참여기간	참여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(2025.12.31.까지) 청년 채용하여야 함
지원금신청	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신청
고용조정 제한 기간 (구, 인위적감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속 1년간 지원금 신청 시(720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채용일 3개월 전 ~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- 운영기관 관리 * 근속 2년 후 지원금 신청 시(480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규직 채용1년 후 ~ 정규직 채용 2년내(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 없음) - 고용센터 관리
고용조정 이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(대분류,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) - 23(중분류,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퇴사)(세분류①~⑧) - 26(중분류,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)(세분류③)되는 경우
고용조정 발생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고용기간(6개월) 유지 못한 경우 - 지원금 일체 지급 하지 않음 - 최소고용기간(6개월) 유지 후 발생한 경우 - 월할계산하여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예) 2024.1.1.(채용), 2024.07.16.(퇴사) - 7개월 16일 근무 / 지원금 7개월 지급함(16일치 일할 계산없음)</p>

4. 지원 내용

<p>신청기간</p>	<p>채용일은 2025.1.1. ~ 2025.12.31.</p> <p>*채용시기에 따라 2025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</p>
<p>지원기간</p>	<p>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함</p>
<p>지원한도</p>	<p>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 50%까지 지원</p> <p>* 기업의 피보험자수 100명/50% = 50명 참여가능</p> <p>* 기업피보험자수 34.2명(1년평균) 인 경우- 35명으로 인정, 35/50%=17.5명/18명 참여가능</p>
<p>지원한도 설정 및 채용 계획 변경</p>	<p>참여기업의 지원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(운영기관 승인 후 변경)</p> <p>- 최종 지원금 신청시 지원한도 오류 발견시 정정 할 수 있음</p>

5-1. 지원 수준, 절차

·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, 1년 최대 720만원(최대 12개월) + 2년 최대 480만원(최대 24개월)									
지원수준	<p>①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(최소고용기간)이내에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</p> <p>② 참여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(6개월)이상을 근로 한 후 퇴사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회차 : 6개월분 지원금 지급 - 1회차 후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- 만약 1회차 이후 2개월 지원금 신청 전 퇴사한 경우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함 <p>③ 지원대상 청년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유지지원금 일수 동안 지원금 미지급함 (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지원함) 								
지원절차	<p>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(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에 신청</p> <p>② 운영기관 적격여부 심사</p> <p>③ 승인 후 협약 체결</p> <p>④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자 명단 제출(서식6) -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7) - 근로계약서 사본 - 그 외 필요서류 요청시 제출 <p>⑤ 지원금 신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지원 주기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1회차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2회차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3회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2f2f2;">채용일</td> <td>채용 후 6개월</td> <td>채용 후 9개월</td> <td>채용 후 12개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⑥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(서식8) - 임금 지급증빙자료(급여대장, 임금내역) - 기업명의 통장 사본(최초 1회신청시 제출) - 그 외 지원금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	지원 주기	1회차	2회차	3회차	채용일	채용 후 6개월	채용 후 9개월	채용 후 12개월
지원 주기	1회차	2회차	3회차						
채용일	채용 후 6개월	채용 후 9개월	채용 후 12개월						

5-2. <유형 2>(신설) 청년 지원 수준, 절차

· 청년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(18,24개월 각 240만원)

지원수준

- ①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I 유형」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, 지원대상이 됨
- ②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
- ③ 참여청년이 18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, 1회차 인센티브(240만원)를 지급하고 2회차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음

지원절차

- ① [고용24\(www.work24.go.kr\)](http://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
※청년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지원금

② 지원금 신청

지원 주기	1회차	2회차
채용일	채용 후 18개월	채용 후 24개월

③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(청년용)(서식8)
-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8-1),
- 청년용 확인서(서식8-2)

6. 부정수급

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가입 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가입시킨 경우 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가입시킨 경우 ③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인 경우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
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고용보험 이력을 숨기거나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

※ 위 내용을 위반 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할 수 있으며, 사업장은 3년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제한, 참여자는 추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제한(재가입 불가)입니다.